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일시적 보행 장애 포함〉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333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웅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1. 27.

(3) 회 부 일 : 2026. 1.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사람을 장애인 및 보호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긴 사람은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기한을 둔 임시 주차허가증을 발급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이러한 제도가 장애의 영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동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사용기한을 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도록 하여 이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긴 사람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u>사람</u> 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 ----- - <u>사람(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¹⁾에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발급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임차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 상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아.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개정안은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보행상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여,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단기 이동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해당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보행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의학적 판단을 통해 이동 능력 제한 여부를 확인 후,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장애인 주차제도의 이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별 ‘일시적 장애’ 장애인 주차제도 적용 기준 비교 >

국가	일시적 장애 정의	판단 기준	유효기간
미국(뉴욕주)	의학적으로 인증된 일시적 이동 장애	뉴욕주 면허를 발급받은 의사 또는 족부 전문의가 이동능력 제한 상태를 의학적으로 인증	최대 5년 이내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여
미국(텍사스주)	마비·질 환·부상 등으로 이동능력이 실질적으로 손상된 일시적 장애 상태	마비, 폐질환, 심장기능저하, 관절염, 발 질환 등 이동능력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의학적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6개월 이내
호주	보행 능력 크게 제한된 일시적 장애	의료 상태 (medical condition)으로 인해 걷는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인지 여부 + 최소 6개월 이상 지속 여부	상태에 따라 부여
일본 (도치기현)	부상·질병·임산부 등 일시적 보행 곤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이동 곤란 여부	오렌지색 이용증 ²⁾ (유효기간 있음)
일본 (야마구치현)	부상자 등으로서 보행이나 승강이 불편한 자	보행 또는 승강 동작이 불편한 상태인지 여부	대상 제외 시 반환
일본 (미야자키현)	일시적으로 보행이 곤란한 자	보행이 곤란한 상태	임산부·부상자 1년 미만
일본 (후쿠오카현)	장애인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주차 이용상 배려가 필요한 자	임산부(임신 7개월~산후 3개월), 부상자 등	오렌지색 이용증 ³⁾ (유효기간 있음)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사람중심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발급 개선 연구. 정책 23-07, 재구성.

□ 다만,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건수는 약 52만 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약 30만 면) 대비 약 173%에 달하는 등, 이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수요가 공급 면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2) 장애인, 난치병 환자용은 녹색이용증으로 유효기간 없음.

3) 장애인, 고령자용은 적색과 녹색이용증으로 유효기간 없음.

개정안과 같이 일시적 보행 장애 상태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할 경우, 발급 건수는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이용 단계에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간 갈등 등 제도 운영상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 및 주차표지 발급 현황 >

(단위: 면/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약 30만	약 30만	약 30만	약 30만	약 30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건수	약 51만	약 51만	약 52만	약 52만	약 52만
면수 대비 발급 건수	약 170%	170%	약 173%	약 173%	약 173%

주1):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의 자료를 기초로 '22년말 기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의 전체 주차면수 대비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면수 비율로 산정

주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98.4.11.) 이전에 건축한 대상시설은 미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 따라서 일시적 보행 장애의 범위 및 인정 기준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주차구역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소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⁴⁾(참고자료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 관련 법령).

□ 또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시적 보행 장애의 판단 기준 마련, 주차표지 발급·관리 절차에 관한 하위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의 행정준비 및 제도 안내·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행 준비기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한편,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관련, 총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제도 개선 방향 및 조문 구성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요구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관련 개정안 내용 비교 >

구분	주요내용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44호	• 활동지원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02호	•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163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발급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862호	• 다른 법률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구역에 주차 허용

4)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 내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구분·설치해야 함.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긴 사람의 주차 편의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재 장애 유형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는 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에 비해 표지 발급 건수가 많아, 주차난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부상자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이하 각호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 고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